의안 번호 807

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## 1. 검토경과

O 제 출 일 자 : 2010. 12. 1(수)

○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O 위원회회부 : 2010. 12. 6(월)

○ 위원회심사 : 2010. 12. 16(목)

## 2. 제안이유

-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현실화로 주민 편의 제공
- 거주자우선주차제 정착에 따른 부정주차 차량 이동조치 삭제 및 부정주차요금 조정으로 부정주차를 근절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O 월 주차요금 10,000원 ⇒ 15,000원으로 조정(안 제5조의2 제2항)
- 점포 앞 전용구획 3시간 이하 사용자에 대한 월 주차요금 10,000 원 부과(안 제5조의2 제2항 단서)
- 부정주차 차량 이동조치 요구 조문 삭제 및 부정주차요금
  10,000원 ⇒ 30,000원으로 조정(안 제5조의2 제3항)

#### 4. 근거법규

○「주차장법」제9조 제2항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 주차요금을 상향 조정하여 그 수입금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코자 하 는 사항으로
- 주차요금 상향 조정에 따른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용 주민은 다소 부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, 그 간의 주차요금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주차요금을 현실화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# 주차장법

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(이하이들을 합하여 "노상주차장관리자"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,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-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.
- 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(이하 "주차요금등"이라 한다)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.
-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.